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7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김병주·유용원·박용갑
오세희·이수진·장철민
김소희·황명선·박 정
허성무·허 영·전현희
이언주·진성준·이달희
임종득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같은 장비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어 상이한 소요결정·획득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은 성능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술의 변화 주기도 짧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현행 절차로는 이를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 제품이 배제되고, 개발 실패 시 장기간의 전력공백이 초래되며, 획득기관과 운용부대의 분절로 실사용 경험이 개발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전력체계와 최소기능품, 성능개량품, 유기적 순환개발, 운용개량 단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주요정책과 소요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각군 등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예산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성능·일정·소요 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방첨단전력사업은 사업 특성 및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우선 선정 및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의 공급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아.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방첨단전력사업을 유기적 순환개발, 구매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방부장관이 민간 첨단기술 적용 장비 등의 획득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공급망·보안·성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전력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여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첨단전력체계가 군과 공공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위탁받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파. 방위사업청장이 최소기능품 및 단계별 성능개량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실사용평가 계획수립 전까지 작성하여 운용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

하. 운용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종사용자집단의 실사용평가로 결과가 확정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의 개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거.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을 우선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기능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군이 주관하는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너. 첨단전력체계의 특성 및 공통설계표준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의 범위·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더. 국방첨단전력사업의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 또는 상대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단독 소유의 경우 국가에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함(안 제20조).

러. 첨단전력체계에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 포함되는 경우 상대

자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며.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민간 과학기술 동향 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버.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서. 업무 종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둠(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부칙 제2조).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방위력개선 등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전력체계”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통합하여 획득하는 체계로서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임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획득 또는 단계적 성능개량이 필요한 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첨단전력사업”이란 첨단전력체계의 획득·배치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이와 관련된 기능·능력의 확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쟁적 기술대화”란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요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 및 세부내용 등을 비교·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운용군”이란 첨단전력체계를 운용하거나 운용을 지원하는 각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을 말한다.
5. “최종사용자집단”이란 첨단전력체계의 획득 과정에 참여하며 이를 실사용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운용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6. “배치”란 첨단전력체계를 부대에 위치시켜 운용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최소기능품”이란 핵심 임무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어 최초로 배치되는 첨단전력체계를 말한다.
8. “성능개량품”이란 최종사용자집단의 의견 반영, 새로운 기능 추가 또는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최소기능품 등의 성능이 향상된 첨단전력체계를 말한다.
9. “유기적 순환개발”이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최소기능품을 우선 배치하고, 단계별 실사용평가와 최종사용자집단의 의견 반영을 통하여 성능을 반복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획득 방식을 말한다.
10. “운용개량 단계”란 획득이 완료된 첨단전력체계를 운용군이 주관하여 운용·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성능을 개량하는 단계를 말한다.
11. “공통설계표준”이란 유사한 첨단전력체계 군(群)에 공통 적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운용성 향상 및 개방형 체계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방첨단전력사업

제4조(첨단전력발전위원회)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방첨단전력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첨단소요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인증목록을 통한 구매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운용개량 단계 전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 및 해촉 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첨단소요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첨단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달성하려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 임무 중심의 첨단소요(이하 “첨단소요”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다.

1. 국방부(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을 포함한다)
2. 합동참모본부

3. 각군 및 해병대

4. 방위사업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첨단소요를 제기한 경우 군사적 필요성, 기술 확장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소요를 결정할 때에는 공통설계 표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첨단소요 제기·결정 및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기계획 및 예산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예산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③ 첨단전력체계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하여는 「방위사업

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는 “첨단전력체계”로 본다.

④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첨단소요가 결정되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진 방법을 포함한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첨단소요의 결정과 함께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목표성능·일정·소요비용 등은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계획에는 공통설계표준의 활용 여부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업, 연구기관,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경쟁적 기술대화의 실시 과정에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각군, 해병대 및 첨단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약 및 계약)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제8조의 추진계획상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방위사업법」 제46조의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 사업추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환개발의 방법(이를 다른 방법과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후속단계에 관한 계약,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용개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1인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방첨단전력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첨단전력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다음 단계의 성능개량품 개발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업등,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통보·통지와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환수액의 감면, 제2항에

다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 방법)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은 첨단전력체계의 특성 및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 순환개발, 구매 또는 임차(일정 기간 동안 첨단전력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추진하되,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환개발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로 본다. 다만,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매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최종사용자집단은 배치 전 실사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인증목록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첨단전력체계를 임차할 수 있다. 배치 전 및 임차 기간 중 최종사용자집단은 실사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 또는 유기적 순환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면 운용군에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인증목록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용군 외에 합동 참모본부, 각군, 해병대,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에 최종사용자집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운용군은 제6항에 따른 인원을 포함하여 최종사용자집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관리, 평가, 비용분석 및 비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증)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이 개발한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첨단전력체계로 획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증 및 그 결과의 보완·개량을 수행하는 기관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증의 집행, 절차·방법, 결과의 보완·개량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목록을 통한 구매) ① 국방부장관은 공급망, 보안, 성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전력체계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첨단전력체계의 인증목록(이하 “인증목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인증심사를 거친 첨단전력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고 관리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임무수행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또는 운용군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무수행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완화하거나 인증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획득된 첨단전력체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품질이 검증된 첨단전력체계

⑤ 방위사업청장은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구매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구매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매한다.

⑨ 그 밖에 인증심사의 기준·절차, 인증목록의 등재·관리, 구매 절차,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분야 통합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첨단전력체계가 군과 공공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첨단전력체계를 조달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분야 통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5조(기술보고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적 순환개발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최소기능품 및 단계별 성능개량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사용평가 계획수립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기술보고서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보고서를 운용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술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사용평가) ① 운용군은 첨단전력체계의 실사용평가 개시 전까지 실사용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사용자집단의 실사용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기술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② 최종사용자집단은 실사용평가를 실시하고, 운용군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사용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 단계의 성능개량품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사용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실사용평가 계획수립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 배치) ① 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과 협의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단계의 성능개량품 개발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가능한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을 운용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이 배치된 후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해당 첨단전력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반복하여 적용한다.

③ 운용군은 배치된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을 운용하며 보완·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의 의견을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 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라 한다)는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이 배치·운용되는 동안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운용개량 단계) 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체계에 대한 기능 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개량 단계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첨단전력체계는 「군수품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운용군으로 관리전환된다.

②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된 후 운용군은 해당 첨단전력체계를 운용·유지하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관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운용군의 요청에 따라 사업적·기술적 사항 및 그 밖에 성능개량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용군은 운용개량 단계에서 첨단전력체계의 주요 임무 또는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는 등 중대한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소요로 추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는 기준·절차 및 운용개량 단계에서의 성능개량 추진과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준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되, 첨단전력체계의 특성 및 공통설계표준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의 범위·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공통설계표준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 첨단전력체계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첨단전력체계의 표준화 및 표준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9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자가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였거나 상대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으로만 연구개발을 완수하였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 상대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④ 개발성과물 귀속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특례) ① 국방첨단전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전력체계에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 포함되는 경우 상대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조·소지·임대·임차하는 등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및 감독의 기준과 절차의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첨단기술개발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및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제기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 과학기술 동향 및 민간 과학기술을 첨단전력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2.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의 지원
3. 제11조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보고서의 작성

5. 그 밖에 첨단기술개발 촉진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성실수행에 대한 책임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운용개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그 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 및 운용개량 단계의 면책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 또는 운용개

량 단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적 순환개발

②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운용하도록 배치한 물품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이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전력체계